

자 체 감 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1년 「재난안전실」 실국 감사 —

2021. 9.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천원, 명)

번호	소관	건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시정	주의	권고	회수	금액	감액	금액	추징	금액
계		4건	1	3	0	1	2,131	-	-	-	-
1	○○○○과	2019 □□대비 □□요령 도민순회교육 사업 등 근로자 퇴직적립금 미환수	1			1	2,131				
2	○○○○과	○○통신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부적정		1							
3	○○○○과	증빙자료 첨부·확인없이 인건비 집행		1							
4	○○○○과	道 ●●●●단 역량강화사업 ◆ ◆ 구입 등 부적정(주의)		1							

2. 처분요구일람표

1. 2019 ■■■ 대비 ◎◎ 요령 도민순회교육 (시정) 4
사업 등 근로자 퇴직적립금 미환수
2. △△통신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부적정 (주의) 7
3. 증빙자료 첨부·확인없이 인건비 집행 (주의) 10
4. 道 ⊕⊕⊕⊕단 역량강화사업 ◎◎ 구입 등 부적정(주의) (시정) 13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2019 ○○대비 ○○요령 도민순회교육 사업 등 근로자 퇴직
적립금 미환수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2019 ○○대비 ○○요령 등 도민순회교육 및 2019 ○○발생 대처방안 국제포럼 및 정책개발 사업 등을 공기관경상적대행사업비로 편성하고 ○○○○연구원에 위탁하여 수행케 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3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 집행지침에 따르면 광역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써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사업 종료 후 정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의 예와 같이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그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등을 첨부해야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연구원 퇴직금지급규정」 제2조에 따르면 이 규정은 ○○○에 1년 이상 근무한 상근임원 및 직원에게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공기관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이 종료되었을 경우 보조금 실적보고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검사를 통해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통지하거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하며, 특히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반납토록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21. 1. 26. ○○○○연구원의 2019 ○○대비 ○○요령 등 ○○○○교육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보조○○원의 퇴직적립금 1,311 천 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반납 조치 없이 2021. 2. 8. 정산확정 통보하였으며, 2021. 2. 17. ○○○○연구원의 2019 ○○발생 대처방안 국제포럼 및 정책개발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보조○○원의 퇴직적립금 820 천 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반납 조치 없이 2021. 2. 18. 정산확정 통보하였다.

그 결과,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2,131천 원이 미반납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년 미만 근무 근로자 퇴직적립금 미환수 내역

(단위 : 원)

사업명(수탁기관)	○○보조원 퇴직급여 총당금 적립내역	금액	비고
계		2,131,920	
2019 ◇◇대비 ◇◇요령 등	소계	1,311,120	

도민순회교육 (△△△△연구원)	'19. 9월분 퇴직급여 총당금	160,300	
	'19. 10월분 퇴직급여 총당금	165,830	
	'19. 11월분 퇴직급여 총당금	165,830	
	'19. 12월분 퇴직급여 총당금	165,830	
	'20. 1월분 퇴직급여 총당금	162,500	
	'20. 2월분 퇴직급여 총당금	162,500	
	'20. 3월분 퇴직급여 총당금	165,000	
	'20. 4월분 퇴직급여 총당금	163,330	
2019 △△발생 대처방안 국제포럼 및 정책개발 (○○○○○연구원)	소계	820,800	
	'19. 8월분 퇴직급여 총당금	164,160	
	'19. 9월분 퇴직급여 총당금	164,160	
	'19. 10월분 퇴직급여 총당금	164,160	
	'19. 11월분 퇴직급여 총당금	164,160	
	'19. 12월분 퇴직급여 총당금	164,160	

조치할 사항 ○○○○과장은

미반납된 퇴직적립금 및 이자 등은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시정)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통신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상황에 따른 □□지원 훈련 및 □□문화 캠페인 전개를 위해 매년 공모를 통해 (사)□□□□□□□□연맹 경상북도본부(이하 ‘□□□□’이라 한다)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표 1]과 같이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표 1】 ●●●● 보조금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연도	예산편성			사업자 선정 공모		보조금 교부신청		정산검사	
		계	보조금	자부담	공모일	선정일	접수일	결정일	일자	잔액
■통신 지원 및 캠페인	2019	17,500	12,000	5,500	2019.01.08	2019.02.15	2019.03.06	2019.03.19	2020.02.03	3.9
	2020	11,200	10,000	1,200	2020.01.21	2020.02.14	2020.03.03	2020.04.13.*	2021.02.16	3.9

*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예산감액으로 변경 교부결정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결정 및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기준에 따르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는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교부조건에 적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예산편성된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의 사업 지원범위와 기준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원칙(운영비, 자본적 경비 제외)’라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자본형성적 경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할 수 없고 자본적 경비의 사업계획에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경상적 사업으로 계획을 보완하거나 예산의 변경 또는 전용을 통해 추진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표 2]에서와 같이 ㉠㉠통신 지원 및 ㉠㉠㉠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고문의 지원범위와 기준과 다르게 자본적 경비인 이동식 트레일러¹⁾ 및 중계기 구입비를 보조금지원 신청하였는데도 아무런 보완 없이 보조결정 또는 경상북도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다.

특히, 2019년의 경우는 경상북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내용과 다르게 보조금 교부신청 되었는데도 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받지 않고 보조금 교부결정 하였다.

【표 2】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자본경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연도	보조금심의위 제출시		보조금 교부결정시		비 고
	물품명	산출내역	물품명	산출내역	
2019	중계기	3,000,000원×2대	무선라디오 조립키트	15,000원×150개	
			천막·책상·결상 대여	150,000원×15동	
2020	운송용 트레일러	5,900,000원×1대	운송용 트레일러	5,900,000원×1대	

*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예산감액으로 변경교부결정

조치할 사항 □□□□과장은

보조금 교부 시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사전절차 이행 등 제출된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과목별 집행기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차량등록번호 93구 0456(소형화물), 소유자 사공문상(연맹대표)으로 차량 등록됨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증빙자료 첨부·확인없이 인건비 집행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경북○○○○○ ○○대응력 강화교육 및 훈련, ◎◎현장 긴급출동 및 피해복구활동 지원 등 민간 ▲▲대응력 제고를 위해 [표 1]과 같이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표 1】 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보조사업자	연도	사 업 비			주요 사업내용	비고
		계	도비	자부담		
경북◎◎◎◎ ◎◎	2018	260,000	260,000	-	- 안전사고예방 점검, 순찰 지원	
	2019	260,000	260,000	-	- ◆◆발생시 동원 및 대응	
	2020	200,000	200,000	-	- 교육 및 훈련, 장비 등 지원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25조, 제26조, 제30조의 규정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증빙서류 일체를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집행의 적정성을 검사하고,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집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류 보완을 요구하거나 보조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표 2]과에서는 보조사업자인 경북[표 2]에서 아래 [표 2]와 같이 [표 2]복구 업무지원, 워크숍 업무지원 등 각종 인건비(총 11건, 13,660천원)를 지급하면서 근무일시, 근무지, 근무내용 등에 대한 근로계약서나 출근부, 근무일지 등 해당 근로에 대한 증빙자료없이 인건비 수령자가 서명한 인부임 지급확인서²⁾ 한장만을 근거로 인건비를 지급하여 지급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데도, 증빙자료 보완 등 조치없이 보조사업자가 신청한 보조금을 그대로 정산확정 하였다.

【표 2】 증빙자료없이 지급된 인건비 내역

(단위 : 명, 천원)

연도	인건비 지급사항	지급일	인원	지급액	비고
2018	●●● ◇◇피해 ▷▷복구 현장 업무지원비 (10.7.~10.16)	10.19	4	3,200	
"	■■■■ □□피해 ■■복구 현장업무 및 사후업무 지원비(10.27.~11.8.)	11.7	3	3,120	
"	워크숍 업무지원비 (12.14.~12.15.)	12.20.	4	960	
2019	⊕⊕ ○○ ▽▽복구 업무지원비 (10.3.~10.6.)	10.7.	3	640	
"	⊕⊕ ○○ ▽▽복구 업무지원비 (10.8.~10.19.)	10.24.	4	1,920	
"	⊕⊕ ○○ ▽▽복구 업무지원비 (11.9.~11.16.)	11.18	3	1,200	
"	하반기 워크숍 업무지원비 (12.6.~12.7.)	12.13.	4	960	
2020	☒☒활동 인부임 (3.16.~4.24. / 기간중 5일)	5.21.	2	700	
"	☒☒☒☒복구 업무지원비 (7.26.~7.27.)	8.20.	2	160	
"	☒☒☒☒복구 업무지원비 (8.15.~8.16.)	8.24.	2	320	
"	☒☒☒☒복구 업무지원비(9.4.~9.6.)	9.8.	2	480	

2) 지급확인서 기재사항 : 입금액, ○○○○업무지원비(00월 00일 ~ 00월 00일), 인적사항, 계좌 등이 기재됨

조치할 사항 ○○○○과장은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집행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도 ■■■■단 역량강화사업 □□ 구입 등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 발생시 현장에서 道○○○○단의 즉각적 대처 및 효율적 복구 교육 등 단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표 1]과 같이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표 1】 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주요 사업 계획	비고
	계	도비	기타		
2020 道△△△△단 역량 강화사업	18,000	18,000	0	- 도 △△△△단 워크숍 개최 · △△ 취약요소 점검 등 교육 · ▷▷발생 즉각대처 교육 · ◇◇예방 민관협력방안 토의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도지사가 교부 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당초 계획한 ○○관련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³⁾

계획이, 코로나19 확산사태로 취소하게 된 경우라면, 워크숍 개최관련 사업비 (총 17,650천원)는 반납처리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비를 반납조치하지 않고, [표 2]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단원들의 역량강화와 직접 관련 없는 피복 구입(조끼, 단복 등 총 16,119천원) 및 사무실 노트북(1,290천원)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협의해 준 사실이 있고, 그 결과 당초 계획한 워크숍 경비가 아닌 ■■ 구입 등으로 보조금이 집행된 사실이 있다.

【표 2】 道■■■■단 역량강화사업 당초계획 대비 부적정 집행 내역

구 분	품 목	금액(천원)	주요 내용	비 고
당초 계획	워크숍 개최	17,150	중식, 책자, 교육용품 구입 등	
실제 집행	◆◆ 등 구입	16,119	조○, 단○, 방○○, ○○ 등	
	●●복 구입	1,290	사무실 ●●복 구입	

※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없이 도와 보조사업자 간 협의하여 ◇◇, ○○○ 등 구입

조치할 사항 ◆◆◆◆과장은

보조사업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는 등 보조금이 교부결정의 내용 및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관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 워크숍 주요계획 : ◇◇ 취약지 점검교육, ●●발생 대처교육, 민관협력방안 토의 등